



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19. 10. 17.(목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육위원회
수석전문위원 최경분

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: 2019년 10월 8일
- 회부일자: 2019년 10월 11일

3. 개정이유

- 표창 수여 대상을 “교육관련 상징성이 있거나, 공로가 인정되는 동·식물 및 구조물 등”으로 확대하고,
- 표창의 종류 및 명칭을 단순화하여 표창의 품격 향상 및 대국민 신뢰도 제고
- 교육지원청별 규모에 맞는 교육장 소속 공적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으로 표창 업무의 효율성 제고

4. 주요내용

- 표창 수여 대상 확대(안 제2조)
 - 개인 또는 기관·단체 → 개인 또는 기관·단체, 동·식물 및 구조물 등
- 표창의 종류 및 명칭 단순화(안 제3조)
 - 공적상, 창안상, 우등상, 협조상 → 표창장, 상장, 감사장
- 교육장 소속 공적심의위원회 구성(안 제11조제3항)
 -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 ~ 9명으로 구성 → 5 ~ 13명으로 구성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안은 표창 수여 대상을 ‘교육관련 상징성이 있거나 공로가 인정되는 동·식물 및 구조물 등’ 까지 확대하고, 표창의 종류와 명칭을 현실에 맞게 ‘표창장, 상장, 감사장’ 으로 하며, 교육지원청의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을 기존 ‘5 ~ 9명’ 에서 ‘5~13명’ 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됨
- 다만, ‘동·식물 및 구조물’ 에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